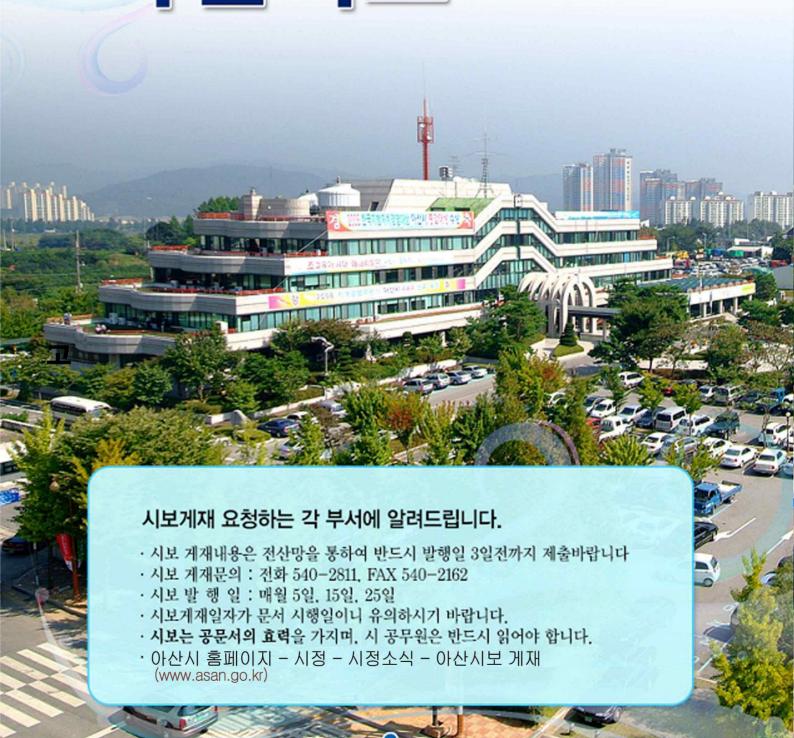
발행인: 아산시장 편집·보급: 홍보담당관 전화: ☎540-2811 http://www.asan.go.kr/ 아산시 시민로 456

우) 31512



【게재순서】

Οl	법	여	
$\boldsymbol{\vdash}$	\vdash	~71	<u> </u>

0	제 2018 - 1755호 (이산시 폐기물차다시설 설치측진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추기)) -	- 4
0	제2018-1775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9
0	제 2018-1776호 (이산시 영안산자연휴양림 압장료 및 시설사용료 장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0
0	제2018-1777호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0	제2018-1778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1
	고 시	
0	제 2018-326호 (제3중사설물의 자정(해제) 고시)	- 37
0	제 2018 - 335호 (이산시 도시관리계획(탕정 3호어란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경미한 시항))	- 38
	공 고	
0	제 2018-1753호 (아신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연장))	- 42
0	제 2018-1756호 (도시계획사설(대로3-38호)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 47
0	제 2018-1763호 (도시계획사설(연구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 51
0	제 2018-1767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53
0	제 2018-1768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80조2117호 외 2대))	- 57
0	제 2018-1772호 (남산 유이숲체험원 주말 프로그램 참기자 모집 공고)	- 59
0	제 2018-1774호 (도로지정 공고[허*])	61
0	제 2018-1785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미상이륜차 2대))	- 62
0	제 2018-1791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57더9159호 외 7대))	- 64
0	제 2018-1794호 (이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안))	- 66
0	제 2018-1796호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67
0	제 2018-179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71

0	제2018-1801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65더1796호 외 1대))	72
0	제2018-1802호	(무단방치 자동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08누1120))	74
0	제2018-1803호	(도로지정 공고 [한재*])	76
0	제2018-1806호	(도로지정 공고[이마*])	77
0	제2018-1813호	(2018년 8월 운행정지명령 공고)	78
\circ	제2018-1820호	(분묘개장(이장) 공고(실옥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80

아산시 공고(입법예고) 제2018 - 1755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8월일아산시장

- 1. 자치 법규명 : 이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 고자 함.
- 3. 주요내용
 -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 17조제4호 '그 밖의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규정 삭제
- 4.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간 : 공고일부터 2일간
 - 의견 제출 방법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아산시청(자원순환과, 자원화시설팀)
 - 주소 :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청)
 - 전화 : (041)540-2757 팩스: (041)540-2039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2.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아산시	폐기들	· 불처리시	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여	네 관한 <i>3</i>	즈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		의 견	비고	
	찬성	반 대			

[붙임]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7조(세출)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삭 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아산시 공고(입법예고) 제2018 - 1775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 O 이용자 행정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용어 및 세부내용 정비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내용을 추가 반영.
- O 숲속 야영장 확대조성과 시설 이용료와 별도로 휴양림 입장료 등 별도 부과에 따른 민원해소, 휴양림 입장료, 시설사용료 면제, 감면내용 및 환불기준 정비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안 제1조, 제5조)
- O 용어 정비 (안 제2조)
- 시설사용료 개정 (안 제2조제1항 별표2)
- O 휴양림 입장료,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내용 개정 (안 제4조, 제5조)
- O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환불기준 개정 (안 제6조)

3. 관련법령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4. 의견제출

O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산림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 8. 29. ~ 9. 3.(공고일로부터 5일간)

- 나. 의견 제출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서면(우편), 전화, 직접방문, FAX, 전자우편(okwo@korea.kr)로 제출
- 다. 의견 제출처
 - 1) 주소 : (우)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산림과
 - 2) 전화 : 산림행정팀 041-540-2994 (팩스 041-540-209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보이	1
臣 口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전화 번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찬성	여 부 반 대	의	견	비고	1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1월, 7월, 8월, 12월"을 "7월, 8월"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아산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염치읍 및 영인면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제5조 제목 "(시설사용료 면제)"를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 중 "「아산시 주차장 조례」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9호"를 "「아산시 주차장 조례」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드벤처 이용요금을 20퍼센트"를 "어드벤처, 물놀이터 이용요금을 30%"로하고, 제4항 제3호 중 "휴양림 사업소에서"를 "아산시에서"로 한다. 제5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휴양관, 숲속의집, 숲속야영장) 사용료를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실시에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감면된 금액은 사용완료 후 입금계좌로 환급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 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자
 - ⑥ 제5조제5항의 적용시기는 비수기로 한정하며 1인당 1개소로 한정한다.
 - ⑦ 시설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에 게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및 숲속 야영장"

으로, "숙박료"를 "숙박료 및 숲속 야영장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90퍼센트"를 "80%"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0퍼센트"를 "60%"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70퍼센트"를 "40%"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0퍼센트"를 "20%"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

시 설 명	구 분	사용기준	요	급	비고
· 기 결 정		사중기 간 	비수기	성수기.주말	HI <u>1</u> '
숲속의집	4인실(복합) 4인실(단독) 5인실 6인실 8인실 10인실 15인실 18인실 20인실	1실동/1일	45,000 50,000 55,000 65,000 75,000 95,000 130,000 150,000 210,000	55,000 60,000 65,000 75,000 90,000 115,000 155,000 180,000 250,000	※사용시간 당일 14:00∼ 익일오전 11:00
숲속 야영장	야영테크 20㎡ 야영데크 36㎡	1개소/1일	20,000 30,000	25,000 35,000	※사용시간 <u>당일 14:00~</u> 익일오전 11:00
시 설 명	구 분	사용기준	요 개인	금 단체	비고
물놀이장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7시간/1명	5,000 4,000 3,000	4,000 3,000 2,500	기문 가 기(4 중), 시)
스카이 어드벤처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1회/1명	7,000 10,000 7,000 5,000	8,000 5,500 4,000	제5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체요금을 적용
포레스트 어드벤처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1회/1명	5,000 4,000 3,000	4,000 3,000 2,500	
시 설 명	구 분	사용기준	요	금	비고
주 차 료	-소·중형차량 -대형차량	1대/1일		2,000 4,000	제5조 제3항 기준적용
평 상	평 상 평 상 평 상	7시간/1일	5,000	4,000 7,000	소형 2m×2m 중형 2.5m×2.5m 대형 4m×4m
야외무대	무 대	1시간/1일		30,000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혅 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 제1조(목적) -- 조례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휴양에 관한 법률 _ 제21조의5--영인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 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7월, 8월-----4. "성수기"란 1월, 7월, 8월, 12월 을 말한다. 5. · 6. (현행과 같음) 5. • 6. (생 략) 7. "영인면민 및 아산시민"이란 주 7. "아산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영인면과 주소지가 아산시로 되어 있는 아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 사람을 말하며, "지역주민"이란 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염치읍 및 영인면으로 되어있는 사람을 말한다.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어린이"란 7세 이상부터 12세 <신 설>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① (현 제4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③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

1.~ 3. (생략)

<신 설>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① (생 략)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1.~ 3. (생략)

- ② <u>제6조제1항</u>의 시설사용료 면제 가 되는 시설은 휴양림 내 야외무 대, 주차장 시설로 한정한다.
- ③ 시장은 휴양림 주차장 이용 요 금을 <u>「아산시 주차장 조례」제3</u> 조 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카이 및 포 레스트 어드벤처 이용요금을 2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제5조<u>(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u>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2	<u>제5조제</u>	<u>1항</u>	

④ --------- <u>어드벤처, 물놀이터 이용요</u> 금을 30%-----

1. ~ 4. (현행과 같음)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휴양관, 숲속의집, 숲속야영장) 사용료를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입실시에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감면된 금액은사용완료 후 입금계좌로 환급한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등록증 소지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 설>

<신 설>

- ① (생 략)
 - ② 사용하기로 예약한 휴양림 숙 박시설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숙박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사용 예약일 2~4일 전까지 취 소 시 :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
 - 3.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 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 공자유족증 소지자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증 및 보훈보상재상자유족증 소 지자
- ⑥ 제5조제5항의 적용시기는 비수 기로 한정하며 1인당 1개소로 한 정한다.
- ⑦ 시설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 받 고자 하는 사람은 휴양림 관리·운 영자에게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 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현행과 같음)

- ② ----- 숙 박시설 및 숲속 야영장---------- 숙박료 및 숲속 야영장 사용료---.
- 1. (현행과 같음)
- ----- <u>80%</u> -----
- ----- 60% -----

- 4. 사용 당일 취소 시 : 사용료의 <u>7</u> 0퍼센트 환불
- 5. 사용 당일까지 연락 없이 불참시 : 사용료의 <u>50퍼센트</u> 환불
- 6. ~ 9. (생략)
- ③ 휴양림 숲속 야영장 환불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 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 전액환불
- 2. 사용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시 : 사용료의 90% 환불
- 3. 사용 예약일 전일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80% 환불
- 4. 사용 예약일 당일 취소 시 : 사 용료의 70% 환불
-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 시: 전액환불

4	4
<u>0%</u>	
5	
<u>20%</u>	
6.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아산시 공고(입법예고) 제2018 - 1776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O 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사용 시간을 일원화 및 전산 운영에 따른 징 수요금 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O 야영장 사용시간 변경 (안 제5조)
- O 징수요금 처리기준 변경 (안 제6조)

3. 관련법령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4. 의견제출

- O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산림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 8. 29. ~ 9. 3.(공고일로부터 5일간)
 - 나. 의견 제출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서면(우편), 전화, 직접방문, FAX, 전자우편(okwo@korea.kr)로 제출 다. 의견 제출처
 - 1) 주소 : (우)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산림과
 - 2) 전화 : 산림행정팀 041-540-2994 (팩스 041-540-209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2.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1부. 끝.

부이	1
ED	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전화 번호:

			Г		
조례안 내용	<u></u> 찬 성	여 부 반 대	의	견	비고

아산시 규칙 제 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양림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호나목 중 "13:00"을 "14:00"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장 및 시설사용 시간) 휴양	제5조(입장 및 시설사용 시간)
림 입장 및 시설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단서 신설></u>	<u>다만, 휴양림 운영상</u>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
	구하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사용 시간	2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숲속 야영장 이용자 : 오후	나 <u>14:</u>
<u>13:00</u> ~ 다음날 오전 11:00	00
까지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징수한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아산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사용 당	
일 세입 결의하여 <u>익일</u> 오전까지	<u>다음 날</u>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아산시 공고(입법예고) 제2018 - 1777호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수목원 이용자의 행정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용어 및 세부내용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함임.

2. 주요내용

- 새로운 장비(드론 등) 이용 등 제한 규정 명시 (안 제7조)
- 수목원내 영리목적의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규정 명시 (안 제9조)
- O 수목원 프로그램 운영시 재료비 등의 징수 규정 추가 (안 제12조)

3. 관련법령

O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제5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산림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08.29. ~ 09.03.(공고일로부터 5일간)
 - 나. 의견 제출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서면(우편), 전화, 직접방문, FAX, 전자우편(okwo@korea.kr)로 제출다. 의견 제출처
 - 1) 주소 : (우)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산림과
 - 2) 전화 : 산림행정팀 041-540-2994 (팩스 041-540-209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2.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보이	1
亡 口	Ι.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역	안)
--	---	---	---	---	-----	-----	-----	----	---	----	----	------	------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찬성	여 부 반 대	의 견	비고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게시판이나 아산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홈페이지"를 "홈 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드론,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 또는 장비를 조작하거나 타는 행위 (단, **교통약자** 보조를 위한 기구나 장치 등 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지장을 주는"을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 서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중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를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원일 및 휴원일) ①~②	제7조(행위의 제한) ①~② (현행과
(생 략)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유로 휴원	3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 내용을	
수목원 게시판이나 아산시 영인산	홈페이지
<u>휴양림사업소 홈페이지</u>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수목원 관람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자는 수목원과 시설물 내에서 다 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2. (생략)
 - 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 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

4. ~ 9. (생략)

10. 그 밖에 관람객의 관람이나 수 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생략)

- 제9조(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9조(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 ①~④ (생 략)
 - ⑤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생략)
 - 2. 특정기관·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 3. (생략)

•	

- 1. 2. (현행과 같음)
- 3. 드론,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 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 구 또는 장비를 조작하거나 타 는 행위 (단, 교통약자 보조를 위한 기구나 장치 등은 예외로 한다.)
- 4. ~ 9. (현행과 같음)
- 10. ----------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 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
- ② (현행과 같음)
- 제한) ①~④ (현행과 같음)
- (5) -----
- 1. (현행과 같음)
- 2. ----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3.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12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시장은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허하슾 및 교유프리그랜 이용

③ 시장은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자에게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받을 수 있다. 아산시 공고(입법예고) 제2018 - 1778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O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순화,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용어의 정의 순화 (유물, 수장품 → 소장품)

3. 관련법령

O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2조

4. 의견제출

O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장(참조: 산림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 08. 29. ~ 09. 03. (공고일로부터 5일간)
- 나. 의견 제출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서면(우편), 전화, 직접방문, FAX, 전자우편(okwo@korea.kr)로 제출 다. 의견 제출처
 - 1) 주소 : (우) 31512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산림과
 - 2) 전화 : 산림행정팀 041-540-2994 (팩스 041-540-209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u>www.asan.go.kr</u>)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2.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O)	1
岜	口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	-----	-----	----	---	----	----	------	-----	-----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전화 번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찬성 반 대	의 견	비고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2호 중 "유물"을 "소장품"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게시판이나 영인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언론매체"를 "홈 페이지"로 한다.

제22조 제목 "(수장품의 수집)"을 "(소장품의 수집)"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수장품의 관리)"를 "(소장품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장품"을 "소장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시물은 일반전시물"을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 수장품"을 "소장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외"를 "소장품외"로한다.

제24조 제목 "(수장품의 대여)"를 "(소장품의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중 "수장품"을 각각 "소장품"으로 한다.

제25조 전단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을 "시설사용료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입장료"를 "시설사용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제3조(정의)
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장고"란 <u>유물</u> 을 안전하게 보관	2 <u>소장품</u>
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	
설을 말한다.	
4. ~ 6. 삭 제	
제4조(개관일 및 휴관일) ① (생 략)	제4조(개관일 및 휴관일)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	②
유로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	
는 휴관 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영인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언론매	
<u>체</u>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u>(수장품의 수집)</u> ①~③ (생	제22조 <u>(소장품의 수집)</u> ①~③ (현행
략)	과 같음)
제23조 <u>(수장품의 관리)</u> ① 시장은 <u>수장</u>	제23조 <u>(소장품의 관리)</u> ① <u>소장</u>
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	<u>五</u>
치하여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	
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② <u>소장품은 일</u>
일반 전시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	<u>반 소장품</u>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u>소장 수장품</u> 에 대하여 도	③ <u>소장품</u>
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	
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전시된 <u>물품외</u> 자료는 수장고에	④ <u>소장품외</u>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장품의 대여) ① 수장품의 대 제24조(소장품의 대여) ① 소장품-----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수장품을 대여할 때는 안전관리를 ② 소장품-----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 다. ③ 수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③ 소장품-----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 기 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 제25조(준용규정) 시설사용료 등은 ---료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금 -. 시설사용료 -----으로 한다. 입장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

다.

아산시 고시 제2018 - 326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 일

아 산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 • 안전조치에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시경(에세) 시표	관한 사항	n1 1.
현대병원	아산시 시민로 388	박현서	안전등급 판정	안전등급 A	
미래한국병원	아산시 번영로 230번길 13,	임영국	안전등급 판정	안전등급 A	
아산참요양병원	아산시 염치읍 송곡안길 31	아산참의료 재단	안전등급 판정	안전등급 A	

아산시 고시 제2018 - 335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탕정 3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경미한 사항)

- 1.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8-2번지의 탕정 3호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공원녹지과(041-540-29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5일

아 산 시 장

- 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 나.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붙임]

이신시 도시관리계획(탕정 3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세[변경없음]

7.8	도면 표시	공원명	시설의	o) - 31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변호	ত বা ত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꼬
기정	3	3호공원	어린이 공원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8-2 번지	4,781.6	-	4,781.6	충고2005 -100호 (05.5.28)	

② 도시관리계획(탕정 3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총괄표)

				시설면	년적(m²)		
	구분	시설내용	부지	면적	건축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7	ᅨ	4,781.6	4,781.6	_	32	
	소	계	2,640.0	2,700.0			시설율 : 56.5%
	도로 및 광장	도로·광장	1,913.0	1,913.0	_	_	
공 원	조경시설	분수대	78.0	78.0	-	_	
시 설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611.0	611.0	-	_	
	휴양시설	휴게쉼터	38.0	38.0	-	_	
	편익시설	화장실	-	60.0	-	32	건폐율 : 0.7%
ĵ	녹지 및 기타	녹 지	2,141.6	2,081.6	_	-	녹지율 : 43.5%

2. 세부공원시설 결정(변경)조서

					기 정			변 경		
구분	시설명	기호	위치	부지 면적 (㎡)	규모 수량	시설 면적 (㎡)	부지 면적 (㎡)	규모 수량	시설 면적 (㎡)	비고
	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28-2	4,781.6	2동	_	4,781.6	2동	32	
	소계			1,913.0			1,913.0			
	도로(소계)			469.0			469.0			
	산책로1	101		80.0			80.0			
	산책로2	102		28.0			28.0			
	산책로3	103		98.0			98.0			
	산책로4	104		18.0			18.0			
도로	산책로5	105		98.0			98.0			
및 광장	산책로6	106		9.0			9.0			
광장	산책로7	107		54.0			54.0			
	산책로8	108		30.0			30.0			
	산책로9	109		54.0			54.0			
	광장(소계)			1,444.0			1,444.0			
	광장1	1		298.0			298.0			
	광장2	2		761.0			761.0			
	광장3	3		385.0			385.0			
	소계			78.0			78.0			
조경 시설	파고라A	A		-	2동		-	2동		
	분수대	4		78.0			78.0			
	소계			611.0			611.0			
유희 시설	어린이놀이터1	5		394.0			394.0			
	어린이놀이터2	6		217.0			217.0			
	휴게쉼터(소계)			38.0			38.0			
휴양 시설	휴게쉼터1	7		19.0			19.0			
	휴게쉼터2	8		19.0			19.0			
편익 시설	화장실	9		_	-	_	60.0	_	32	
	녹지			2,141.6			2,081.6			43.5%

3. 공원 내 도로 결정(변경)조세[변경없음]

구분	둥급	류별	번호	폭 (M)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비고
기정	소로	3	1	2.0	산책로	40	광장2	광장2	
기정	소로	3	2	4.0	산책로	7	소로3-1	부지외곽도로	
기정	소로	3	3	2.0	산책로	49	소로3-2	광장3	
기정	소로	3	4	1.5	산책로	12	광장1	소로3-5	
기정	소로	3	5	1.5	산책로	65	부지외곽도로	부지외곽도로	
기정	소로	3	6	1.5	산책로	6	소로3-5	광장2	
기정	소로	3	7	3.0	산책로	18	부지외곽도로	광장3	
기정	소로	3	8	6.0	산책로	5	광장3	진입도로	
기정	소로	3	9	3.0	산책로	18	부지외곽도로	광장3	

아산시 공고 제2018 - 1753호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연장)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8월일아산시장

-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시내버스 수입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요금할인 등 공적부담이 따르는 주민편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항목을 추가하고자함.
- 3. 주요내용
 - 가. 「재정지원」관련 규정 변경
 -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무료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결손액 보전, 65세 이상 노인추가할인 등"을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무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할인, 65세 이상 노인추가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결손액 보전"으로 변경 (안 제15조제8호)

※ 붙 임:일부개정조례(안)및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 간 내에 아산시장(참조: 대중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간 : 공고일부터 1일간
 - 의견 제출 방법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아산시청(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 주소 : (우)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온천동, 아산시청)
 - 전화: (041)540-2577 팩스: (041)540-2919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2.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아선	난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	---------	------	-----	-------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전화 번호:

조례안 내용		여 부	의 견	비고
<u> </u>	찬성	반 대	기 건 	

[붙임]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무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할인, 65세이상 노인추가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결손액 보전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햀 개 정 아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제15조(재정지원)-----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 -----는 경우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8.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무료 8.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환승무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할인, 65세이상 할인, 65세이상 노인추가할인 등 공 노인추가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적부담으로 인한 시내버스 운행결손 액 보전 시내버스 운행결손액 보전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아산시 공고 제2018 - 1756호

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 1. 아산시 신인동 114-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아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일반주민에게 보입니다.
-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0일

아 산 시 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아산시 신인동 114-8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사업
 - 2) 명 칭 : 아산 신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대로3-38호) 확충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기정: L=897m, B=24.5m~ 30.5m, A=31,503㎡
 - 변경: L=897m, B=24.5m~ 30.5m, A=30.583m²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기홍
 - 주소 : 충남 아산시 온중로 6. 106동 1105호(용화동, 모아미래아파트)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0년 12월 31일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 사. 열람기간 : 2018. 8. 30. ~ 2018. 9. 19.(14일간, 토·일요일 제외)
-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충청남도 이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이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

□ 붙임 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١١.١١	7 11) Ji =1	-l vl	-1 17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	정		합계	ı	65,591	31,503					
변	경		합계		65,591	30,583					
1	기정	신인동	114-8	도	1,148	420	아산시				
2	기정	신인동	117-1	도	804	640	아산시				
3	기정	신인동	119	전	630	200	아산시				
4	기정	신인동	120-1	도	226	226	아산시				
5	기정	신인동	120-2	전	510	510	아산시				
6	기정	신인동	121-2	임	414	351	아산시				
7	기정	신인동	123-7	임	223	62	아산시				
8	기정	신인동	125-2	임	358	340	아산시				
9	기정	신인동	231-2	대	384	384	아산시				
10	기정	신인동	232-1	대	371	371	홍경미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555-2 신성은하수아파트 101-605			
11	기정	신인동	233-1	대	204	204	아산시				
12	기정	신인동	234	답	309	309	아산시				
13	기정	신인동	234-1	도	1,124	911	아산시				
14	기정	신인동	235	전	569	562	아산시				
15	기정	신인동	236-3	장	1,919	99	아산시				
	기정	신인동	236-3	장	1,919	0	아산시				
16	기정	신인동	238-6	전	852	1	김종금	아산시 용화동 743 301호	천안축산업 협동조합	천안시 영성동 67-2	지상권, 근저당권
17	기정	신인동	238-8	도	64	6	아산시				
18	기정	신인동	238-9	전	29	29	아산시				
19	기정	신인동	239-3	과	1,257	1,257	아산시				
20	기정	신인동	280	도	586	432	아산시				
21	기정	신인동	282-5	도	1,666	147	아산시				
	기정	신인동	282-6	도	4,892	2,256	아산시				
22	변경	신인동	282-6	도	4,892	3,744	아산시				
23	기정	신인동	295	답	971	966	아산시				
24	기정	신인동	295-1	전	217	217	아산시				
25	기정	신인동	295-12	전	803	803	아산시				

.,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인동	295-12	전	803	553	아산시				
26	기정	신인동	295-13	임	6,385	6,236	김재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2동 1302호			
	변경	신인동	295-13	임	6,385	4,141	김재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2동			
27	기정	신인동	295-14	임	1,363	1,363	아산시				
28	기정	신인동	296-3	과	244	244	김경옥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8 문촌마을 606-1401			
29	기정	신인동	296-6	도	1,982	1,968	아산시				
23	변경	신인동	296-6	도	1,982	1,997	아산시				
30	기정	신인동	296-11	전	307	10	김기홍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6, 106동 1105호 (용화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근저당권
31	기정	신인동	296-14	도	162	86	아산시				
32	기정	신인동	296-19	임	270	270	아산시				
33	기정	신인동	296-20	임	42	42	아산시				
34	기정	신인동	297-1	도	524	524	아산시				
35	기정	신인동	297-4	전	804	802	아산시				
36	기정	신인동	298-1	도	89	89	아산시				
37	기정	신인동	300-2	전	69	69	아산시				
38	기정	신인동	301-3	대	71	71	김길자	아산시 신인동 301	천안축산업 협동조합	천안시 영성동 67-2	근저당권
39	기정	신인동	307-5	전	92	92	아산시				
40	기정	신인동	308-3	과	4	4	아산시				
41	기정	신인동	395-1	도	473	175	아산시				
42	기정	신인동	395-2	전	158	76	아산시				
43	기정	신인동	399-2	대	288	11	아산시				
44	기정	신인동	399-3	구	572	7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5	기정	신인동	403-7	도	88	44	아산시				
10	변경	신인동	403-7	도	88	49	아산시				

٠. ي	7 12	, _a_1	اد، اس	~1 FF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6	기정	신인동	404-3	도	851	386	아산시				
47	기정	신인동	404-4	답	77	77	아산시				
48	기정	신인동	406	창	672	672	아산시				
49	기정	신인동	406-1	도	2,127	2,001	아산시				
50	기정	신인동	407-1	답	536	294	아산시				
51	기정	신인동	407-2	대	149	145	아산시				
52	기정	신인동	407-3	구	66	14	한국농어촌 공사				
53	기정	신인동	407-4	답	33	14	아산시				
54	기정	신인동	407-5	답	50	50	아산시				
55	기정	신인동	407-11	답	17	11	이용우	대전 서구 변동 29-2			
56	기정	신인동	407-13	잡	135	58	아산시				
57	기정	신인동	408	도	1,838	111	국	건설부			
F.0.	기정	신인동	435	구	12,159	1,021	국	건설부			
58	변경	신인동	435	구	12,159	1,038	국	건설부			
59	기정	신인동	437	도	10,209	1,476	국	건설부			
60	기정	신인동	438	도	195	139	국	건설부			
61	기정	신인동	439	도	73	73	국	건설부			
62	기정	신인동	440	도	517	517	국	건설부			
63	기정	신인동	443-1	구	1,051	410	국	건설부			
64	기정	신인동	443-3	구	28	15	국	건설부			
65	기정	신인동	443-5	구	276	118	국	건설부			
CC	기정	신인동	1-가		15	15	미등기				
66	변경	신인동	1-가		15	0	미등기				

주) 296-6번지 및 395-1번지 대장면적은 토지대장면적임

아산시 공고 제2018 - 1763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 1. 아산시 장존동 185-9번지 일원의 충남과학교육원 이전 신축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도서를 아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일반주민에게 보입니다.
- 2.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2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0일

아 산 시 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아산시 장존동 185-9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사업
 - 2) 명 칭 : 충남과학교육원 이전 신축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교육연구시설 A=38.036m²(변경없음)
 - 도로 L=210m, B=12m(세부계획 변경)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 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20년 12월 31일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붙임참조, 변경없음)
- 사. 열람기간 : 2018. 8. 30. ~ 2018. 9. 19.
- 아.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충청남도 이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이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

붙 임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연	2 2 2	. 3 - 3	지	면적	(m²)	소유	구자	소유	-권 외의 권	리
번	소재지	지번	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70,635	42,458					
1	아산시 장존동	161-1	도	1,552	58	충남교육감				
2	아산시 장존동	165-2	답	32	32	충남교육감				
3	아산시 장존동	167-5	답	60	60	충남교육감				
4	아산시 장존동	177-5	전	793	793	충남교육감				
5	아산시 장존동	606	구	12,281	67	국(농림부)				
6	아산시 장존동	185-9	임	13,849	13,849	충남교육감				
7	아산시 장존동	185-10	임	13,849	13,849	충남교육감				
8	아산시 장존동	185-11	임	1,663	1,663	충남교육감				
9	아산시 장존동	185-12	임	1,708	1,708	충남교육감				
10	아산시 장존동	185-13	임	703	703	충남교육감				
11	아산시 장존동	185-14	임	8,282	8,282	충남교육감				
12	아산시 장존동	185-15	임	1,200	1,200	충남교육감				
13	아산시 장존동	435	구	12,159	23	국(농림부)				
14	아산시 장존동	347-8	임	841	171	아산시				

아산시 공고 제2018 - 1767호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코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아 산 시

- 1. 공 고 명: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2. 공고기간: 2018. 9. 5. ~ 2018. 9. 20.
- 3. 폐차시기: 2018. 9. 21. 이후
- 4. 공고대상: 미상 이륜차 9대
- 5. 공고내용
 - 가. 상기 이륜차는 2018. 9. 21. 이후 강제처리(폐차) 될 예정입니다. 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앞ㄴ차를 자진처리(자진회 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이륜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 해당 차량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권리행사(대체 압류, 저당 등)를 하여 주시고,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산시 교통행정과(☎** 041-540-2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방치장소	비고	사진대지
1	미상	이륜차	미상	충남 아산시 외암로 1247, 장존청솔아파트 지하 1주차장 입구 오른쪽	번호판 없음	
2	미상	이륜차	미상	충남 아산시 외암로 1247, 장존청솔아파트 지하 1주차장 입구 오른쪽	번호판 없음	
3	미상	이륜차	미상	충남 아산시 외암로 1247, 장존청솔아파트 113동 입구 자전거 거치대 옆	번호판 없음	The second secon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방치장소	비고	사진대지
4	미상	이륜차	미상	충남 아산시 외암로 1247, 장존청솔아파트 지하 2주차장 프리액션벨브실 앞	번호판 없음	THE REAL PROPERTY OF THE PROPE
5	미상	이륜차	미상	충남 아산시 외암로 1247, 장존청솔아파트 지하 2주차장 프리액션벨브실 앞	번호판 없음	
6	미상	이륜차	미상	충남 아산시 외암로 1247, 장존청솔아파트 지하 3주차장 101동쪽	번호판 없음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방치장소	비고	사진대지
7	미상	이륜차	미상	충남 아산시 외암로 1247, 장존청솔아파트 109동 옆쪽	번호판 없음	EXAMPLE CONTROL OF THE PROPERTY OF THE PROPERT
8	미상	이륜차	미상	충남 아산시 외암로 1247, 장존청솔아파트 게이트볼장 앞	번호판 없음	
9	미상	이륜차	미상	충남 아산시 외암로 1247, 장존청솔아파트 102동 3라인 앞	번호판 없음	

아산시 공고 제2018 - 1768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문을 발송 또는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소유자 미상 및 사망,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05일

아 산 시



- 1. 공고대상 : 80조2117호 외 2대(붙임 공고대상 참조)
- 2. 공고기간 : 2018. 09. 05. ~ 2018. 09. 20.
- 3.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다. 또한 자진처리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게 되며,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2 041-540-2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처리명령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 번	차량번호	채명	소유자 (대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지	방치장소
1	80조2117	코란도밴	박호	810415–1*****	경북 구미시 인동32길 이하여백	충남 이산시 방축동 121-10 그린빌 입구 도로변
2	94러6425	봉고Ⅲ 1톤	0 *수	670123-1*****	충남 이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이하여백	충남 이산시 배방읍 장재리 2111번지 도로변
3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미상	충남 이산시 모종로 21, 한성필하우스1차 후문 앞 도로변

아산시 공고 제2018 - 1772호

『**남산 유아숲체험원 주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아산시에서는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주말 숲체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8일

아산시장

- 1. 프로그램명 : 남산 유아숲 체험원 주말 숲체험 프로그램
- 2. 운영일시 : 2018년 9월부터 매주 토요일 10시30분 ~ 12시
- 3. 장 소 : 남산 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 4. 참가대상 : 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족 또는 단체(기관)
- 5. 모집인원 : 매주 50 여명 [선착순 모집]
- 6. 접수방법 : 아산시 산림교육문화 홈페이지 예약

[https://www.asan.go.kr/sanlim]

- ※ 홈페이지에서 알리미 신청을 하면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산림 교육문화체험에 대한 안내 문자를 수신 할 수 있습니다.
- 7. 주요내용 : 숲과 자연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 8. 기타사항
 - O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 됩니다.
 - O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보호자(1명 이상)가 같이 참여 하여야 합

니다.

- 선착순 접수 완료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예약사항 변경 포함)에는 프로그램 시작 3일전까지 반드시 예약을 취소(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2918)
- O 사전 연락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향후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산 림교육(숲체험) 프로그램의 우선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 아산시 산림교육문화 홈페이지 예약 후 최종 예약완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약승인 문자 발송)
- O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체험 활동에 현격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O 모집방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본 모집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처 : 아산시청 산림과 산림교육팀 041)540-2918/2921

아산시 공고 제2018 - 1774호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8. 08. 28.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1 필	치 ! 지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282-10	137	
	282-16	10	이원*외 13명
둔포면 둔포리	282-23	374	
	321-15	8	
	321-20	217	허*
	321-21	35	91
	321-30	105	
계		886	

○ 도로길이 : 78m

○ 도로너비 : 6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허가담당관실 비치

아산시 공고 제2018 - 1785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문을 발송 또는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소유자 미상 및 사망,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05일

아 산 시



- 1. 공고대상 : 미상 이륜차 2대(붙임 공고대상 참조)
- 2. 공고기간 : 2018. 09. 05. ~ 2018. 09. 20.
- 3.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다. 또한 자진처리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게 되며,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041-536-8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처리명령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대상

차량번호	차량명	소유자	주소	방치장소	보관장소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충남 아산시 어의정로 17번길 6-47 맞은편 담벼락	아산폐차장 (041-549-1414)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충남 아산시 시민로394 시민약국 앞	"

아산시 공고 제2018 - 1791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 또는 통지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 명, 소유자 미상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05일

아 산 시

- 1. 공고대상 : 57더9159호 외 7대[붙임 강제처리(폐차) 대상 참조]
- 2. 공고기간 : 2018. 09. 05. ~ 2018. 09. 30.
- 3. 강제처리(폐차) 시기 : 2018. 09. 30. 이후
-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 해당 차량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권리행사(대체 압류, 저당 등)를 하여 주시고,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041-540-2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번호	차량명	소유자	주소	방치장소	보관장소
57더9159	<u>쏘렌</u> 토	김*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92번길 이하여백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 186-19	온양종합폐차장 (041-541-6477)
경기50허 3069	다이너스티	(주)씨*이투어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267 이하여백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92-2 낙원가든 주차장	폐차장코리아산업 (041-544-8766)
49도9731	레이	뷰*이텍㈜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이하여백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초 원아파트 105동 가스저장실 앞	폐차장코리아산업 (041-544-8766)
14조7984	아벨라델타	K*M SAN*RA B	전남 신안군 흑산면 도목리길 이하여백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48, 이지 더원5단지 지하주차장	폐차장코리아산업 (041-544-8766)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914 TH원룸 주 차장	아산폐차장 (041-549-1414)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48, 이지 더원5단지 입구 횡단보도 앞	폐차장코리아산업 (041-544-8766)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892번지 도로변	아산폐차장 (041-549-1414)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405-2번지 은 수교차로 부근	아산폐차장 (041-549-1414)

아산시 공고 제2018 - 1794호

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안)

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아산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에 따라 관계도서를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1일

아 산 시 장

- 1. 열람기간 및 의견 제출기간 : 2018. 9. 03. ~ 9. 20.(토·일·공휴일 제외)
- 2. 열람장소(열람시간):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9시~18시)
- 3. 주요내용 : 농업진흥지역, 산업단지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농림지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41-540-2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8.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시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 등은 금지합니다.

아산시 공고 제2018 - 1796호

제 목 :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아 산 시 장

1. 열람기간 : 2018. 9. 3. ~ 9. 28. (26일간)

2. 열람내용 : 2018.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3. 대상토지 : 2018.1.1.~6.30. 토지이동된 3,800필지

4. 열람장소 :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열람부 비치
-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san.go.kr)
- 5. 의견제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2018. 9. 3. ~ 9. 28.까지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 토지관리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 31512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지가조사팀)

팩스: 041-540-2289 전화: 041-540-2588, 2873, 2523

붙임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1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요령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8. 9. 3. ~ 9. 28 (26일간)

- 장 소 : 시청 토지관리과 및 해당토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토지지번별 m'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8. 9. 3. ~ 9. 28 (26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토지관리과 및 해당토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 견제출인에게 통지

2018. 9. 3.

아 산 시 장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8. 1. 1.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 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 O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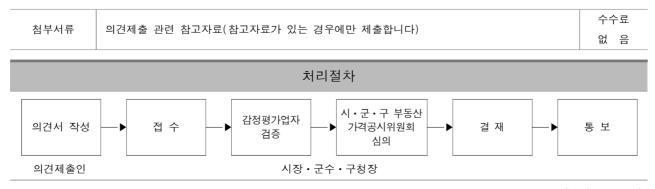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 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 견	주소		
제 출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소재지 및 기	디번	
대 상 토 지	지목		
	실제이용상황	라 -	
	열람지가	원/m²	의견가격 원/m²
	의견제출사위	n T	
의견제출			
내 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아산시 공고 제2018 - 179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8. 31.

아 산



1. 공고사유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원인 : 불법현수막 게시

3. 공고기간: 2018. 8. 31.~ 2018. 9. 17.(17일간)

4. 공고대상

	대실	자		발송일	
연번	납부자명	주소	과태료 부과금액	반송일	반송사유
1	온양중심상권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558	금 5,000,000원	2018. 8. 27.	수취거절
_ '	지역주택조합	88 VEM CEGIT 1990	사전(4,000,000원)	2018. 8. 30.	
2	온양중심상권	지나 이사비 오拉데크 1EEO	금 5,000,000원	2018. 8. 27.	ᆺ치기저
	지역주택조합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558	사전(4,000,000원)	2018. 8. 30.	수취거절

5. 공시송달 내용

- 가. 위의 공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6. **문의처** : 아산시청 주택과(☎ 041-540-2758)

아산시 공고 제2018 - 1801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문을 발송 또는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소유자 미상 및 사망,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05일

아 산 시



- 1. 공고대상 : 65더1796호 외 1대(붙임 공고대상 참조)
- 2. 공고기간 : 2018. 09. 05. ~ 2018. 09. 20.
- 3.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다. 또한 자진처리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게 되며,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2 041-540-29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처리명령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 번	차량번호	채명	소유자 (대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지	방치장소
1	65더1796	마티즈	김*영	761011–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이하여백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681번길 24, 초원아파트 주차장
2	6340744	제네시스 쿠페	기*현	900103-1*****	충남 이산시 배방읍 배방로173번길 이하여백	충남 이산시 배방읍 북수리 1021번지 도로변

아산시 공고 제2018 - 1802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아산시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문을 발송 또는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소유자 미상 및 사망,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05일

아 산 시



- 1. 공고대상 : 08누1120호(붙임 공고대상 참조) 2. 공고기간 : 2018. 09. 05. ~ 2018. 09. 20.
- 3. 공고내용
-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자진처리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등) 하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다. 또한 자진처리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게 되며,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041-536-8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처리명령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 번	치량번호	채명	소유자 (대표)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지	방치장소
1	08누1120	에쿠스	노*채	580213-1****	충남 이산시 염치읍 이하여백	충남 아산시 온천동 234-9번지 앞쪽 도로

아산시 공고 제2018 - 1803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8. 09. 31.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8필 지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50-5	1,567	㈜다우기업, 한재*, ㈜삼우인더스트리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49-1	34	㈜다우기업, 한재*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48-9	15	㈜다우기업, 한재*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78-4	180	㈜다우기업, 한재*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78-3	21	㈜다우기업, 한재*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79-10	141	㈜다우기업, 한재*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79-9	232	㈜다우기업, 한재*
합 계	잘못된 계산식	

○ 도로길이 : 234.0m

○ 도로너비 : 11.0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허가담당관실 비치

아산시 공고 제2018 - 1806호

공

卫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8. 09. 03.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1 필	치 ! 지	편입면적 (m²)	소 유 자
	282-11	296	이 미*
드코머 드코키	327-2	14	나종*
둔포면 둔포리	282-24	37	^] п]*
	282-38	36	이 ㅁ)*
계		383	

○ 도로길이 : 61m

○ 도로너비 : 6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허가담당관실 비치

아산시 공고 제2018 - 1813호

자동차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1. 공고명칭 : 자동차운행정지명령 공고
- 2. 공고기간 : 2018. 9. 3. ~ 2018. 9. 30. (28일 간)
- 3. 공고대상 : 아래 "운행정지명령자동차 현황" (총 11대) 참조
- 4. 공고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 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 차량등록팀(☞ 041-530-61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3.

아 산 시 장

운행정지명령자동차 현황

연번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차대번호	운행정지명령 등록		- 참 고
				일 자	사 유	4 上
1	26서5299	SM3	KNMC4C2HMEP160786	18.8.6.	소유자의 신청	
2	05보6837	NEW 그랜저XG LPG(NEW GRANDEUR XG)	KMHFU41MP3A262289	18.8.6.	포털민원 신청	
3	13어9379	아반떼 (AVANTE)	KMHDG41DBGU504635	18.8.8.	소유자의 신청	
4	19나5346	엑센트 (ACCENT)	KMHCT41UBCU317974	18.8.8.	포털민원 신청	
5	58러7574	크레도스Ⅱ	KNAGC2233XA376008	18.8.9.	소유자의 신청	
6	54더6072	C200 CGI	WDDGF4JB1CA668303	18.8.13.	소유자의 신청(위임)	
7	84루1603	포터초장축 슈퍼캡(PO RTER)	KMFXKS7BP3U697846	18.8.21.	소유자의 신청	
8	58수3016	Golf 2.0 TDI	WVWZZZ1KZBW010714	18.8.22.	소유자의 신청	
9	30거1000	레이	KNACK811BGT129007	18.8.22	포털민원 신청	
10	82무2164	레토나밴	KN3HSS3K22K312372	18.8.29	소유자의 신청	
11	54라5579	투싼(TUCS ON)	KMHJN81VP5U071560	18.8.31.	소유자의 신청	

아산시 공고 제2018 - 1820호

분묘개장(이장) 공고(1차)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실옥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분묘 등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9월 4일

아 산 시 장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시·군	읍·면·동	지 번	분묘기수
아산시	실옥동	181-9, 181-125, 181-128, 181-159, 181-162	197]

2. 개장사유 : 실옥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필요시 화장 후 납골당)

4. 안치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화장 및 안치

○ 무연분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30-30, 공설봉안당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아산시청 교통행정과 ☎041-540-2369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フ] 타
0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	무연분묘(안치)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